

國際環境規制에 따른 韓國貿易의 對應方案

- Non Tariff Barriers를 중심으로 -

崔 宗 洙* · 崔 永 坤*

A Study on the Alternatives of Korea's Trad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Control

Jong – Soo Choi, Young – Kon Choi

Abstract

Toda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are regulating duties of nations and including measures for trade control, creating more and more burdens for the industry and trade of Korea having a high inclination of depending on foreign nations and having weak base for financial and technical position.

Maj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include Montreal protocol for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the CFC, Halon for preservation of the ozone layer,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or the protection of the warming of the earth through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O₂, fossil fuel, Basel convention for the restriction of international movement of harm scrapped material of 47 kind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extinc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the convention integrating Rio manifesto.

Advanced nations including the USA and the major trading nations with Korea are taking steps such as import restriction of the CFC, Halon using products, the intensification of the CO₂ excretion, the restriction for carrying in the harm scrapped material, the new registration of tariff imposition and all these are becoming a new non-tariff barrier.

The Korean government, therefore, has to take positive actions for the prompt information acquisi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environment-relate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for the decrease of the international trade fric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restrictions through the intensification of environment related diplomacy.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to vest and search for the finding of substitute materials and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leaving the stage of searching for the inclination of the environment-related restriction.

* 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I. 序論

國際環境規制는 韓國의 輸出產業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最近 들어 UN環境開發機構(UNEP) 및 主要先進國을 중심으로 지구의 自然, 人間生態界를 環境汚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環境關聯 國際協約의 제정 혹은 기준 協約의 規定을 강화하기 위한 論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92년 6월 Rio유엔環境開發會議(UNCED)를 계기로 地球環境 保存問題가 중요한 國際的 懸案이 되고 있다.

資本主義가 고도화되고 각국의 經濟開發에 따른 產業化, 都市化 및 資源開發에 따른 무분별한 化學製品의濫用, 森林破壞 등으로 인해 地球의 溫室化, 大氣 및 水質污染 등 生態界的破壞가 날로 高調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全世界的으로 環境保護를 위한 폭 넓은 共感帶가 形成되면서 同問題가 國際問題의 중요한 課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7(西方先進國 頂上會議), 77Group, OECD, GATT理事會 등 각종 國제회의에서도 環境保護問題가 주요이슈로 論議되고 있으며, 環境關聯 國際會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環境論議 및 國際協約은 각국의 義務事項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協約의 實效性確保를 위해 대부분 貿易規制措置를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環境保護次元에서 벗어나 國際貿易 및 通商問題와 緊密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向後의 國際環境論議의 進展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世界各國의 交易에 대한 直· 간접적인影響이 더욱 擴大될 展望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環境問題를 고려한 새로운 多者間貿易秩序形成¹⁾에 대한 論議가 필요하다는 認識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本考에서는 國際貿易에 있어서 주요한 懸案인 環境保護問題에 관련된 國際環境協約의 내용과 特徵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交易規制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非關稅障壁(NTB: non-tariff)과 環境規制強化에 따른 우리나라의 對應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最近 國際環境規制의 内容과 特徵

최근의 환경문제가 부분적, 지역적 논의에서汎地球的인 문제로 대두하게 된 것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人間環境會議가 그 효시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冷戰의 涼流屬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80년에 들어서면서 각국의 國內政策과 國際關係에서 중요한 課題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UN環境機構(UNEP)主導下에 國際環境協約의 締結이 가속화되는 등 범지구적인 環境規制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1. 國際環境協約 推進動向

UN環境機構(UNEP)가 발간한 「國際環境條約」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미 체결되었거나 체결을 추진중인 國際環境協約은 1970년 스톡홀름회 이후에 체결된 것이 119여가지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協約들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協定書(1987년), 유엔海洋法協約(1988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移動統制 및 處理에 의한 바젤協約(1989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氣候變化協約(1992년), 희귀동식물 멸종방지를 위한 生物多樣性協約(1992) 등을 들 수 있다.²⁾

1) Uruguay Round에 대응하여 一名 Green Round라고도 칭함.

2) 大韓貿易振興公社, “國際環境協約과 우리의 貿易環境”, 貿公資料 92-48, 1992. 10. pp.7-9.

특히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環境開發會議(UNCED)는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의 참가하에 地球環境保護를 위한 「持續可能한 開發」(ESSD: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을 구현하기 위한 行動綱領과 實踐計劃으로 Rio宣言을 채택하였다.³⁾

또한 先進國정상회의(G-7 Summit)와 OECD閣僚會議는 매년宣言을 통하여 地球環境問題에 대한 解決方案을 제의하고 있고, 開途國 그룹인 G-77도 1991년 6월 북경에서 제 1차 開途國 閣僚會議를 개최하여 베이징선언을 채택하는 등 地球環境問題에 대한 연대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Group⁴⁾에서도 활발하게 地球環境問題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2. 主要 協約의 内容과 特徵

최근의 環境協約은 주로 특정환경오염 또는 폴리물질의 排出, 處理, 交易 등의 禁止 또는 制限措置를 규정하고 있고, 非締約國에 대한 각종제재조치로서 經濟 및 通商制裁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⁵⁾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주요 國際環境協約의 내용 및 규제는 다음과 같다.

1) Montreal 協約書

오존층 폴리물질인 CFC와 Halon의 생산, 소비의 감축 스케줄과 비가입국 交易規制를 규정하고 있는 몬트리얼協約書는 1987년에 채택되어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1992년 2월 27일에 加入·申請하여 그 해 5월 27일부터 적용받고 있다.

몬트리얼協約書에 生產, 消費 및 交易를 규제하고 있는 物質은 15종의 CFC물질과 3종의 Halon, 4염화탄소 및 3염화에탄(메틸클로포름) 등의 총 30여종인데, 이중 CFC물질은 냉동기의 냉매, 전기·전자산업에서의 세척제, 도료, 의약품 등의 분사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Halon은 소화기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⁶⁾

이 協約書는 오존층 保護를 위한 규제물질의 종류 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으로부터 규제물질 함유제품의 輸入도 규제하고 있으며, 開發途上國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財政支援體系(Ozone Fund)를 설치하여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資本 및 技術移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環境變化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규제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強力的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2) Basel協約

바젤協約은 有害廢棄物의 處理 및 交易統制를 위한 協約으로 1989년 3월 채택하여 1992년 5월 발효된 것으로 우리나라 1992년 5월 27일에 加入을 위하여 諸般與件을 마련중에 있다.

同協約에서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해폐기물은 19개 산업폐기물, 27가지의 중금속, 독성화학물질, 2개의 生活廢棄物 등의 47종 廢棄物⁷⁾이다.

또한 규제내용으로는 有害廢棄物의 生產, 處理, 국가간의 交易統制 뿐만 아니라 엄격한 基準을 부여하고 있다. 즉 가입국은 비가입국에 대하여 수출입 금지와 불가피한 거래시 事前同意를 얻거나 事前通告를 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는 化工業, 各種製造業, 醫療業, 農業, 運輸業 등이 해당된다.

3) 李鍾武, “國際環境協約加入과 當面課題” 韓國貿易協會「貿易」2月虎, 1992, pp.11~12.

4) 大韓貿易振興公社, “國際環境懸案解說”, 貿易資料 91~101, 1991, pp. 16~18.

5) 朴鍾秀, “國際環境規制에 따른 分爭과 對應方案”, 關稅, 1993.1, pp.22~23.

6) 金峻漢, “國際環境規制에 대한 우리 企業의 對應” 貿易, 1992.6, pp.15~18.

7) 대표적인 물질로서는 시안화물폐기물, 폴리염화 폐닐류, 염료 및 도료 폐기물, 접착제 폐기물, 중금속 의료 및 의약 폐기물.

3) UN氣候變化協約(Convention on Climate Change)

同協約은 地球溫暖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化石燃料의 사용규제와 에너지의 國別使用限度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한 協約⁸⁾으로 1991년 2월부터 여러차례 정부간의 協約⁹⁾을 거쳐 1992년 브라질의 Rio de Janeiro에서 열린 UN環境開發會議(UNCED)에서 채택된 것이다.

人間生活에 의한 氣候變化 可能性과 그의 惡影響 防止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각국은 協商에 임하였으나 CO₂배출의 규제목표의設定 즉 2000까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에 대한 論題에 대하여 각국은 自國의 利害關係로, 즉 CO₂의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自國產業保護를 위하여 감축일정의 구체화에 반대하였고, EC諸國과 海洋과 인접한 군소 개도국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던 반면에 產油國은 석유수요 감소를 이유로, 기타 개도국은 財政支援과 技術移轉의先行을 조건으로 반대하였다.

그래서 同協約은 당초의 구체적인 協約案에서 각국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 Rio會議에서 채택되었다.

4) 生物多樣化協約

生物多樣化協約(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최근의 유전공학의 발달로 유전자 자원에의 적절한 접근, 關聯技術의 적절한 移轉 등에 의해 지구생물자원의 멸종을 방지하여 生物學的 多樣性의 保全, 이의 지속적 이용과 유전자자원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公正·公評한 配分을 目的으로 9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정부간 협상회의가 있었고 92년 5월 Nairobi에서 열린 全權代表會議에서 協約을 채택하여 Rio會議에서 서명하게 되었다.¹⁰⁾

同協約은 本來 生物種의 多樣性을 保全하기 위한 各國家의 義務와 責任 및 國際協約方案의 具體化를 目標로 하였으나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간 및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入場差異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즉, 선진국은 遺傳資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遺傳工學技術 및 新物質에 대한 獨占的 知的所有權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자국영토내의 풍부한 生物資源에 대하여 排他的인 獨占權을 주장하면서 자국의 유전자원을 使

〈표-1〉 主要 最近國際環境協約

국 제 조 약	규 제 대 상	규 제 내 용	관 련 산 업	비 고
Montreal협정서	CFC Halon4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3염화에탄)	생산 및 소비의 전면금지를 위한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교역규제	냉동, 냉장업 자동차에 어컨 항공기, 반도체 전자정밀기계 소화기	1987년 9월 채택 1989년 1월 발효 1990년 6월 개정 (73개국 가입)
Basel협약	18개 산업폐기물 27개 중금속 독성화학물질 2개 생활폐기물	생산, 처리, 국가간 교역 통제 엄격한 기준부여	화공업, 각종 제조업, 의약업, 운수업	1989년 3월 채택 1992년 5월 발효
기후변화협약	CO ₂ 등 지구 온난화 가스	CO ₂ 배출의 규제	에너지 생산, 이용 산업	1992년 6월 발효
생물다양화 협약	유전자 생물의 종 생명 공학	생물종의 이용 및 개발 생명공학의 적용	의약업, 농업, 임업 생명공학의 이용	1992년 6월 발효

8) 外部部, UNCED 참가보고서 (집무자료 92-115), 1992.7. pp.16-18.

9) 정부와의 협의는 지금까지 5차례 가졌는데 다음과 같다. : 제1차 워싱턴, 제2차 세네바, 제3차 나이로비, 제4차 뉴욕, 제5차 뉴욕.

10) 金峻漢, 前揭書, p.16.

用할 때 使用料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新物質을 제조한 경우에 공동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Rio會議에서는 同協約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구속력있는 協約案에서 기본적인 형태로 서명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4가지의 주요 國際環境協約의 내용과 규제조치 및 關聯產業과의 關係를 정의하면 〈표-1〉과 같다.

III. 環境規制와 非關稅障壁

최근 유엔環境機構(UNEP)주 하에 國際環境協約의 체결이 加速 되는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이 强化되고 있다.

이에 따라 先進諸國은 自國의 環境基準을 엄격히 적용하여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輸入을 規制하거나 輸出國企業들에게 포장지 등 폐기물의 회수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환경기준이 엄격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環境基準 格差에 따른 生產費 差異를 關稅화하거나 각종 行政規制나 經濟規制¹¹⁾를 가하고 있어 國際貿易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1. 環境規制에 대한 輸入制限措置

自然環境과 人間定着環境을 保護하기 위한 環境規制措置는 比較優位의 決定과 그 變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環境保護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국가에서는 產業公害를 철저히 규제하는데 비하여 資本不足, 技術不振, 環境管理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產業에서 발생되는 公害를 규제하지 않는다. 前者에서 생산되는 商品의 코스트는 상당히 인상되지만, 後者에서 생산되는商品의 코스트는 별로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¹²⁾

따라서 環境規制를 실시하기 전에 比較優位를 確保했던 어느 나라의 제품이 公害規制費用의 부담으로 인하여 比較劣位로 역전되고, 反面에 比較劣位에 놓였던 어느 제품이 타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環境管理에 의하여 比較優位로 전환된다면, 이는 環境規制에 의한 比較優位의 逆轉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

그러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環境規制는 比較優位構造의 逆轉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環境管理에 의하여 生產비구조와 製品價格이 변동되어 國際競爭力의 相對的 地位가 변동된다면 貿易 패턴이 변동되고 國際投資 패턴도 변동될 것이다.¹⁴⁾

環境管理에 의한 生產비의 변동은 환경관리기준, 환경관리 정책수단, 사회경제적 구조, 환경조건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이는 상대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첫째, 環境管理基準이 높은 나라에서는 낮은 나라보다 生產코스트의 인상률이 클 것이다. 환경관리기준에

11) 經濟規制란 排出賦課金制度, 製品賦課金制度, 預置金制度, 汚染排出權去來制度 등이다.

12) Harald B. Malmgren, "Environment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Economy", New York, 1971. p. 53.

13) Herbert G. Grubel, "Some effects of Environmental Controls on International Trade : Heckscher - Ohlin Model", in Studi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Economics, ed. Ingo Walter(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86), p.26.

14) Malmgren, op. cit., p. 56.

는 일반적으로 環境質基準¹⁵⁾(EnviroNment Quality Standards), 排出 또는 工程基準¹⁶⁾(Emission and Processstandards), 製品基準¹⁷⁾(Product standards), 公害稅(Pollution Charges) 등을 들 수 있다.¹⁸⁾ 이 기준에 맞추어 規制를 實施하면 막대한 資本과 技術開發로 인하여 생산비의 인상율이 클 것이다.

둘째, 環境管理政策手段으로는 直接規制, 租稅, 補助金 등 여러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租稅는 형벌적 수단으로 채택되는데 비하여 補助金은 지원적 수단으로 채택된다. 租稅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企業이나 消費者의 부담이 되는데 비하여, 補助金은 제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國家 또는 公共機關의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형벌적 성격을 지닌 租稅를 부담하는 產業이 補助金을 받은 產業보다 생산비의 引上率이 현저히 높다.¹⁹⁾

세째, 社會經濟的 構造 즉 公害防止技術水準이 낮고 공해방지를 위한 R & D가 부진한 나라에서는 이 技術水準이 높고 R & D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나라에 비하여 生產費의 상승률이 높을 것이다.

네째, 環境條件으로는 즉 工業化와 都市化가 고도로 발달하여 공해문제가 심각하고, 자연환경이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불충분한 나라에서는 環境自淨能力이 우수한 나라보다 생산비의 상승율이 클 것이다.

이와 같이 環境規制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역전된 나라에서나, 또는 비교열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서는 國際協約과 관계없이 자국의 國內產業, 國際收支, 雇傭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범세계적인 환경관리를 통한 오직 하나의 지구(Only an Earth)를 보존하기 위 해서든 또는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인위적인 非關稅障壁을 도입할 것이다.²⁰⁾

그러므로 環境管理에 의한 國內外의 경제적 충격 조정은 불가피하며, 이에 의한 새로운 비관세장벽의 도입은 國際貿易上에 새로운 마찰과 갈등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國際貿易秩序는 현저히 변동할 것이다.

2. 環境規制에 따른 非關稅障壁의 形態

環境規制에 따라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貿易障壁은 국내 환경정책이나 貿易政策의 주요한 수단으로 응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環境規制에 의하여 대두될 貿易障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政府關與로써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비관세장벽으로서는 政府調達을 들 수 있다. 政府調達이란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국산품의 가격이 외국상품의 가격에 비하여 다소 비싸더라도,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環境規制를 엄격히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自國의 環境管理基準에 합당한 국산품

15) 環境物基準이란 오염의 최대허용한도를 의미함.

16) 排出 및 工程基準이란 배출의 최대허용한도 및 생산공정의 운영양식을 설정하는것을 의미함.

17) 製品基準이란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의 최대허용한도를 의미함.

18) Jean - Philippe Barde,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 Alternative for Environmental Control and Economic Implications" In studi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Economics, ed. Ingo Walter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90), pp. 148 - 154.

19) Malmgren, op. cit., pp. 58 - 60.

20) Ingo Walter, International Economics of Pollution (London and Basingstoke : Macmillan, 1985) pp. 114 - 148.

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 基準에 합당하지 않는 外國商品에 대한 구매력은 사실상 저하될 것이다.²¹⁾

둘째, 關稅 및 行政上의 수입절차에 따라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非關稅障壁으로서는 商界關稅, 僂평防止關稅, 領事節次, 見本要求 등을 들 수 있다.²²⁾

④ 相計關稅는 公害集約產業이나, 또는 그 제품의 輸出에 대한 補助金의 지급이 國際市場에서 부당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이 부당한 경쟁에서 국내산업과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⑤ 環境規制를 엄격히 실시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는 이를 엄격히 실시하지 않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코스트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後者에서 생산된 제품이 前者로 輸出된다면, 이는 바로 「公害僂평」을 의미한다. 따라서 「公害僂평」에 의한 국내산업의 위축을 미연에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관세 이외에 이 품목의 Dumping Margin한도 내에서 추가로 關稅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⑥ 領事節次란 輸出國에 주재하고 있는 輸入國의 領事が 오염물질의 함유 혹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製品의 生產施設이나 生產工程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현지 領事의 檢查證明書를 의미한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去來自體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비용의 추가부담, 거래의 지연, 불확실성의 초래 등으로 貿易去來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⑦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사전에 견본을 요구하고, 이 견본이 환경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세째, 輸入品 및 國際商品의 各種 基準에 따라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非關稅障壁으로서는 보건 및 안전기준, 제약기준에 다른 규정, 상품 및 용기규정, 포장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²³⁾

네째, 輸入 및 輸出에 관한 특정한 環境規制에 따라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非關稅障壁으로는 數量制限, 輸入禁止, 輸入許可制度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價格메카니즘에 의한 輸出入規制에 따라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非關稅障壁으로서는 輸入課徵金 등을 들 수 있다. 環境管理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미비한 環境管理下에서 생산된 제품이 輸入될 경우에 輸入課徵金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섯째, 價格 이외의 규제로써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非關稅障壁으로서는 廣告 및 宣傳規制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規制措置는 公害集約財에 대한 廣告 및 宣傳을 규제함으로써 當該輸入品의 效果의인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環境管理上의 이유로 非關稅障壁을 강화한다면 GATT의 주도하에서 실시되는 貿易自由化는 현저히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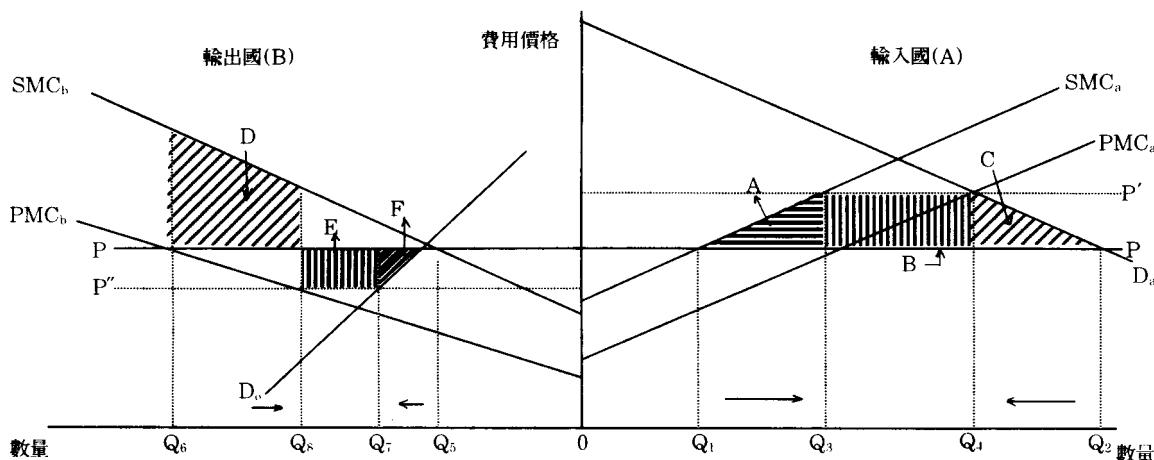
3. 非關稅障壁의 經濟的 效果

環境規制를 實施하는 輸入國의 이를 實施하지 않는 輸出國으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회적 이익과 그 손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Ingo Walter, "Environmental Control and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 An Emerging Policy Issue", Banca Nazionale del Ravaro Quarterly Review, March 1972. p. 86.

22) Malmgren., op. cit., pp.64.66.

23) Ingo Walter(1985), op. cit., pp. 152-155.



위 圖表에서 보면 종래 Q_1Q_2 만큼을 輸入하고 있는 輸入國인 ①국이 국내산업 혹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輸入割當制를 실시하여 수입량을 Q_3Q_4 로 제한한다면 輸入國의 국내가격은 P에서 P' 로 상승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량은 Q_1Q_3 만큼 증가되지만,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비가 수입비용보다 크므로, 輸入國은 B부분만큼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輸入國의 社會的 損失을 의미한다.

그리고, 輸入割當濟에 의하여 國內價格이 인상되고 國內消費量이 Q_2Q_4 만큼 감소됨에 따라, 消費者剩餘가 감소되기 때문에 C부분만큼 사회적 손실을 의미한다.²⁴⁾

그리고, 輸入割當制에 의하여 國內價格이 인상되고 國內消費量이 Q_2Q_4 만큼 감소됨에 따라, 消費者剩餘가 감소되기 때문에 C부분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된다. 그러나 "B"부분만큼 사회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²⁵⁾

한편, 輸出國은 輸入國의 輸入割當제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게 되어, 국내가격은 P에서 P'' 로 하락될 것이다. 따라서, 생산량은 Q_6Q_8 만큼 감소되어 이에 의하여 환경오염이 감소되어 "D"부분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반면에 수출가격의 하락에 의하여 E·F부분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상과 같은, 環境規制에 따른 非關稅障壁으로 輸入割當制의 經濟的效果는 輸入關稅의 效果와 대체로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輸入國에서는 關稅賦課에 의하여 國內價格은 P' 로 상승됨에 따라 生產量은 Q_1Q_3 만큼 증가되어 A부분 만큼의 손실이 발생되고, 동시에 消費量은 Q_2Q_4 만큼 감소되어 C부분 만큼 손실이 발생될 것이다. 한편, 輸出國에서는 國내가격이 P'' 로 하락됨에 따라 生產量은 Q_6Q_8 만큼 감소되어 "D"부분 만큼의 環境上의 이익을 얻는 동시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E·F부분만큼 損失을 입게 될 것이다.

IV. 環境規制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최근 범세계적인 環境保護主義의 強化趨勢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거래대상국인 美國을 위시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國際環境規制를 強化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國際環境規制가 貿易規制措置로 구체화될 때 環境을 이유로 한 輸入規制의 수단 즉 行政規制나 經濟規制와 같은 非關稅障壁과 環境

24) Robert J. Carbaugh, International Economics (Cambridge, Mass. : Winthrop Publishers Inc., 1980)
. p. 117.

25) Ibid., p.118.

關稅로 나타낼 수 있다.

1. 韓國貿易에 미치는 影響

環境規制의 영향으로 產業別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企業에 대하여 원료조달, 生产 및 수출, 판매 등 企業活動에 막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먼저, 한국이 Montreal議定書에 정식으로 서명함에 따라 CFC와 Halon 등을 사용한 제품의 生产 및 輸出에 있어서 同物質의 需給不均衡이 발생함으로써 이들 物質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자동차, 전기, 전자 및 정밀화학업계 등에 막대한 生產差跌과 費用上昇이 예상된다.²⁶⁾

금년의 경우 CFC의 예상수요량은 총 3.6만톤인데 同 議定書에 의하여 2만톤으로 規制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2년부터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 物質을 사용하여 生产된 카에어콘, 냉장고, 에어로졸 등의 제품을 輸入規制하고 있어 계속된 生产과 수출을 위해서 代替物質의 輸入 및 開發에 다른 추가적인 費用負擔이 발생된다.

또한, 原料調達에 있어서 철강, 제지, 석유화학업계는 Basel協約으로 인하여 古鐵이나 폐지, 중금속 등의 수입에 차질을 빚게 되며, 生物多樣性協約에 의하여 목재, 가구, 건설, 의약업계는 原料 및 原資材調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氣候變化協約으로 화학원료인 CO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업종에서 價格上昇으로 인해 生產道路를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에너지多消費業種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에서 이러한 現象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環境意識高潮로 製品販賣 및 마아케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投資時에 投資危險의 축소를 위해 投資對象地域 및 企業에 대한 環境調查를 해야하는 부담이 가중하게 될 것이다.

2. 韓國의 對應方案

각종 國際環境協約은 特定環境汚染 또는 破壞物質의 排出處理, 交易 등의 禁止 또는 制限措置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各種 制裁措置로서 經濟 및 通商制裁를 규정하고 있어, 對外貿易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國제적인 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效率的 對應體制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²⁷⁾

첫째, 國際環境協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일차적인 영향은 國際通商分野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貿易業界는 各種 環境關聯協約의 締結過程과 UN, GATT 등 國際會議에서 環境關聯 討議事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사항이 우리의 주변국에서는 어떻게立法化되고, 國內政策에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比較, 分析, 對應해야 한다.²⁸⁾

交易規制에 대한 環境保護政策으로는 第 Ⅲ章에서 검토되었던 輸出入制限, 禁止, 環境關稅, 稅制上特惠補助金 및 財政上惠澤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우리는 產業構造와 技術이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에 各種 環境規制措置에 先進國과 공동보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外交的 交涉을 강화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規制措置를 신속하게 파악 및 분석을 위해서高度의 技術的 · 法律的 專門性을 요하는 環境分野의 專門要員의 養

26) 大韓貿易振興公社, 前揭書, p.335 - 337.

27) 노부호, “環境과 開發에 관한 國際論議와 前望”, 國民經濟교육연구소 발행『나라경제』 제 19 호, 1992. 6, pp.14-19.

28) 李勝榮, “國際貿易環境變化와 그 適應課題” 大韓商事仲裁院『仲裁』 第 256 號, 1993. 6, pp.19 - 20.

성이 시급하다.²⁹⁾

셋째, 國際環境協約은 CFC, Halon 및 CO₂ 등의 기존 環境破壞 物質의 生產 · 消費를 중지 또는 감소를 요구하고, 新規物質使用을 강요하고 있어 技術基盤이 약한 韓國의 產業은 代替技術, 代替物質 · 代替施設의 開發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關聯業界에서도 적극적으로 과감한 研究와 投資를 병행해 나아간다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發見할 수도 있다.³⁰⁾

네째, 政府 · 企業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環境問題에 대한 認識提高와 環境規制 物品의 使用抑制 및 環境清潔製品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弘報가 필요하다.³¹⁾

아울러, 國民, 企業, 各種 研究所 및 政府가 합심노력하여 地球環境을 둘러싼 國際的 論議와 國際環境協約 締結에 적극 대응하며 공동으로 研究開發하여 질적인 成長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V. 結 言

오늘날 國際環境協約은 各國의 義務事項을 規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協約의 有效한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貿易規制措置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海外依存度가 높고 財政 · 技術的 基盤이 취약한 韓國의 입장에서는 貿易과 產業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주요한 國際環境協約으로는 오존(Ozone)層을 보호하기 위하여 CFC, Halon의 사용규제한 몬트리올議定書, 화석연료인 CO의 使用規制로 地球溫暖化防止를 위한 氣候變化協約, 47種의 有害廢棄物의 國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協約, 生物種의 多樣性 즉 生物資源의 減種을 방지하기 위한 生物多樣性協約, 이들의 協約을 종합한 Rio宣言 등이 있다.

韓國의 주요 거래상대인 美國을 중심으로한 先進國들은 CFC, Halon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輸入規制, CO₂의 排出規制 強化, 有害廢棄物의 搬入禁止, 環境을 관련한 關稅 및 諸稅의 賦課에 관련된 立法化措置로 새로운 非關稅障壁(NTB)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政府는 環境關係 國際會議 등에 적극참여하여 필요한 情報를 신속히 파악하고 동시에 環境外交를 강화하여 우리의 특수한 사정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環境協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미연에 環境規制와 관련된 國際摩擦을 줄여야 한다. 한편, 企業은 環境關聯規制動向을 모색에만 그치고 말고 적극적인 對應을 위하여 代替物質 및 技術開發 등에 과감한 投資와 研究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1) 金峻漢, 國際環境規制에 대한 우리의 對應, 韓國貿易協會, 「貿易」, 1992.6.
- 2) 노부호, 環境과 開發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展望, 國民經濟研究所, 「社會經濟」, 19호, 1992.6.
- 3) 大韓貿易振興公社, 國際環境協約과 우리의 貿易環境, (貿公資料 92-48), 1992.10.
- 4) ———, EC環境政策, (貿公資料 91-100), 1991.12.
- 5) 朴鐘秀, 國際環境規制에 따른 分爭과 對應方案, 關稅廳, 「關稅」, 1993.1.

29) 大韓貿易振興公社, "EC環境政策", 貿公資料 91-100, 1991.12, pp.191-193.

30) 李勝榮, 前揭書, pp.19-20.

31) 李鍾武, 前揭書, pp.15-16.

- 6) 李勝榮, 國際環境變化와 對應課題,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1993.6.
- 7) 李鐘武, 國際環境協約加入과 當面課題, 韓國貿易協會, 「貿易」, 1992.2.
- 8) 外務部, UNCED 參加報告書, (執務資料 92-115), 1992.7.
- 9) Harald B.Malmgren, Environment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Economy, New York, 1971.
- 10) Herbert G.Gruber, Some Effects of Environmental Control on International Trade : Heckcher-Olin Model, In Studi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Economics, ed. Ingo Walter, (New York : John Wilsey & Sons Inc., 1986)
- 11) Jean-Philippe Barde,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 Alternative for Environmental Control and their Economic Implications In Studi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Economics, ed. Ingo Walter,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80)
- 12) Ingo Walter, International Economics of Pollution, (London and Basingstoke : Macmillan), 1985.
- 13) Environmental Control and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 An Emerging Policy Issue, Banca Nazionale del Ravaro Quarterly Review, March, 1972.
- 14) Robert J. Carbaugh, International Economics, (Cambridge, Mass : Winthrop Publishers, Inc., 1980).

